

『국제법무』 제8집 제2호, 2016. 11.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현황

### A Study on Data Protection Laws in Japan

김 봉 수\*  
Kim, Bong-Su

#### 목 차

- I. 서 론
- II.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III.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 IV. 결 론

#### 국문초록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부터 출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입법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200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비가 되었다. 완비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4개 법률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1개 법률로 구성된 5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색영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5년 9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동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고, 적절한 규율 하에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이 확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

---

논문접수일 : 2016. 09. 29.

심사완료일 : 2016. 10. 27.

게재 확정일 : 2016. 10. 27.

\* 법학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행정학부 조교수

화되고, 개인정보취급의 세계화로 탈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개정법에 따라 201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산업별 각 주무 장관이 수행하던 감독권한을 동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감독의 실시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보장과 자율성 존중, 산업별 개인정보 내지 정보보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 장관과 협력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 양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종전까지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각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중요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일본의 개인정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 I. 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2011년)을 마련하였고, 동법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sup>1)</sup>를 설치 및 운영해

---

1) 동 위원회는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사위원회를 승격하여 기능을 확대·기편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충분하게 완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고, 이러한 의문은 특히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보다 선진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보자 한다. 다만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동 개정법의 전면시행 다소 기간이 남아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도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동 개정법 이전의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 고찰하였음을 밝혀 둔다.

## II.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1. 특징과 입법과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유래하는데,<sup>2)</sup> 중앙정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1980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가 채택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이사회권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1년 1월부터 행정관리청<sup>3)</sup>에 프라이버시보호연구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프라

보호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양만식, “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실현과 전개”, 「법학논총」 33권 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916-917쪽.

3) 1984년에는 총무청으로, 2001년에는 다시 총무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버시대책을 발표하였고, 1981년 3월에는 임시행정조사회가 발족하였으며, 1983년 3월에는 이들의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답신을 마련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1985년 7월에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동 연구회는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옴니버스식 입법이 아닌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별개로 한 입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sup>4)</sup> 하지만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는 개별 법률<sup>5)</sup>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필요성의 증대,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의한 국민총배번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염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례의 발생 등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적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sup>6)</sup> 다른 한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 양원의 내각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부대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0년 2월과 1994년 8월의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동 추진본부에서는 1999년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추진을 향한 기본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및 법제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2001년 3월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2년에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4법안과 함께 일괄심의하였으나 국회내 이견과 언론 등의 반발로

4) 백문흠/전혜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12, 11-12쪽; 전은정/김학범/염홍열, “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권 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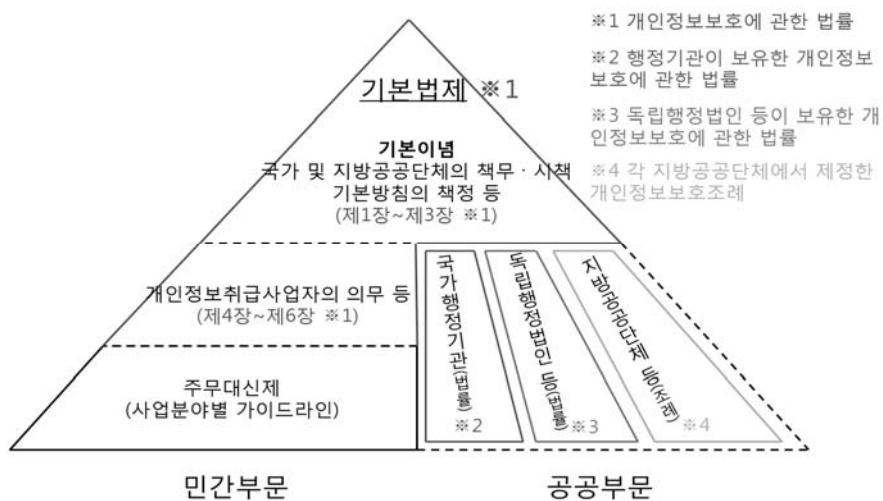
5) 예: 할부매매법, 대금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취업안정법,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

6) 양만식, 전개논문, 917-918쪽.

폐기되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03년 3월 7일 정부는 국회의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폐기된 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월 2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이상과 같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현재 일본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4법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1법으로서 소위 '5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및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민간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부문에도 적용되는 부분(1장부터 3장까지)도 있다. 현행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그림 3-3-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도



7) 백문흠/전혜정, 전계논문, 법제처, 2012, 12-13쪽.

8) 아래 개요도는 일본소비자청의 자료를 번역·정리한 것임(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法体系イメージ; <http://www.caa.go.jp/planning/kojin/pdf/houtaikei.pdf>).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 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은 고도 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취급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sup>9)</sup> 4장부터 6장까지는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1항). 그리고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 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에 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라고 한다(동조 3항). 그리고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동법 제4장부터 제6장의 규율을 받게 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은 동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과거 6개월간 취급한 개인정보가 5,000명 이하인 사업자도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동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2조).<sup>10)</sup>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국가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지방공공단체 역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부담한다(동법 제4조, 제5조). 그리고 국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종합적·일관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동법 제7조).

10) 그리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활동, 저술활동, 학술연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50조 1항).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의 의무는 동법 제4장 1절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용목적의 특정(제15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시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 이용목적의 제한(제16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사전 동의 없이 특정된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적정한 취득(제17조)과 취득에 있어서 이용목적의 통지 등(제18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취득 시에 신속하게 그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한다.
-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제19조) 및 안전관리조치(제20조) :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종업원 및 수탁자에 대한 감독(제21조, 제22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나, 개인정보취급 업무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제공제한(제23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권리 등(제24조 내지 제28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사업자의 현황, 이용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하고(제24조), 본인의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25조). 그리고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본인의 정정, 추가,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정정 등을 해야 하며

(제26조), 사업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 또는 삭제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정당한 경우 지체 없이 정리 또는 삭제해야 한다 (제27조).

- 불만 처리(제31조) :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불만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에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 및 대책들이 진일보하였다는 점에서 동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고 있지만,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과잉반응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sup>11)</sup> 그리고 동법의 준수여부는 주무관청의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감독에만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통제나 정보유출 자체에 대한 사업자에 직접적인 벌칙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만 형사상 벌칙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나.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동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까지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거의 모든 국가행정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동법 제2조 1항). 그리고 동법은 국가행정기관이 다루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문서에 기록된 모든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규율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유의 목적을 제한하고(동법 제3조), 이용목적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고(제4조),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조, 제6조) 등에

---

11) 김상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저널7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2, 34면.

대한 의무를 행정기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통지 및 관리제도(제10조 내지 제11조)를 두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공개청구권(제12조 내지 제26조), 정정청구권(제27조 내지 35조), 이용정지청구권(제36조 내지 4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자문을 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2조).

#### 다.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이용의 확대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 등의 사무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동법은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해서 독립행정법인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다.

#### 라.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불복신청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동 심사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 이내의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동법 제3조). 그리고 동 심사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동법 제4조). 그리고 심사회의 회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서 정해지며, 심사회는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항소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하고, 심사회의 규정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로 조사 및 심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사회는 조사권

한(제19조)을 가지며, 불복신청인은 의견진술기회 등을 보장받는다.

**마.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앞서 언급한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3.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2003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개인정보보호법을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2014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동 개정안은 2015년 9월 3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동법의 개정배경은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색영역의 확대<sup>12)</sup>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신중한 취급을 도모하며, 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현행 주무대신 별로 구성된 수직적인 체계가 새로운 사안이나 여러 분야에 걸치는 획단적 사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활동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sup>13)</sup> 동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2) 대표적인 사례로 JR동일본철도가 고객의 동의 없이 IC카드 승차권시스템인 suica의 승차이력, 이용일시, 성별, 이용액, 생년월일 등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제외)를 히타치제작소에 제공하고, 이를 분석한 마케팅자료를 역 주변의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예를 들 수 있다.

13) 瓜生和久(内閣官房 情報通信技術総合関連制度 参事官),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及び行政手續について, SAS FORUM JAPAN 2015, 2015, 5-6頁.

14) 瓜生和久,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及び行政手續について, SAS FORUM JAPAN 2015, 2015, 15頁 以下; 内閣官房 IT総合戦略室 パーソナルデータ関連制度担当室,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及び 行政手續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

- 개인정보의 정의의 명확화 : 특정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변환한 정보(예: 얼굴 인식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부당한 차별 또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인종, 신념,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특례에서 제외함
- 적절한 규율 하에서 개인정보 등의 유용성 확보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가공정보로 정의하고, 그 가공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 의한 공표 등 취급규칙을 마련함.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지침 작성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표함
-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 개인정보의 제공자와 취득경위 등을 저장하도록 하여 추적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처벌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 내각부의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주무 장관의 권한을 집약하고, 현장검사권한 등을 추가함
- 개인정보취급의 세계화 : 일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외국의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법집행시 외국 당국에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에 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동 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의 외국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함
- 그 밖의 개정사항 : 옵트아웃규정의 엄격화, 이용목적제한의 완화, 5천명 이하의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법 적용  
개정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비하면서 제3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5)</sup> 신설되는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

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2015年 4月, 1-3頁.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2014, 55면 이하 참조.

15) 개정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공안위원회와 법적으로 대등한 기관으로서,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sup>16)</sup>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각총리대신 관할 하에 外局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sup>17)</sup> 동 위원회가 현행 주무대신이 행사하고 있는 보고징수, 지도·조언, 권고, 명령,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인정 및 취소 등의 권한과 함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권한 등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징수 및 현장 검사의 권한을 사업소관 장관 등에 위임할 수도 있다.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위원 중 4인은 비상근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전문사항의 조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비상근이 된다.

### III.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 1. 공공부문

일본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집행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의 추진은 중앙정부에서는 총무성이, 지방에서는 자치행정국 지역정보정책실이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에 따라서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도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총무성은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정 및 개정, 법률의 시행상황의 조사 및 결과 공표, 정보보안대책의 추진, 정보보안감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

16) 한은영,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13호(통권 581호), 2014, 21쪽.

17) 신설이기는 하지만 현행 번호법상 특정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를 개편하는 형태이다.

고 있다. 또한 총무성은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지침의 작성 및 시행을 관할하는데, 총무성이 마련한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아래와 같다(2014년 3월 1일 기준).<sup>18)</sup>

[표 3-3-1]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분 야	소관부처	지침의 명칭	수립검토시기
행정기관	총무성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2004. 9. 14.
독립행정법인	총무성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2004. 9. 14.
경찰공제조합	경찰청	경찰공제조합이 마련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요령(관방장관 통지)	2010. 2. 17. 2012. 6. 14. 최종검토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총무성	지방공무원공제조합의 조합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보장을 위해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2005. 3. 28.

개별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은 해당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의 기관장에게 있고, 총무대신은 기관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총무성은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상황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국가행정기관 43개와 독립행정법인 등 205개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sup>19)</sup>에서 주요한 사항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 등은 2014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정보파일등록부에 등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수는 행정기관이 67,894개, 독립행정법인이 12,568개였고, 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60,893개)이 독립행정법인에서는 국립의료기구(3,952개)가 가장 많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행정기관이 116,253건, 독립행정법인이 7,438건으로 역대

18) 消費者廳, 平成25年度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施行状況の概要, 2014, 22頁.

19) 総務省, 平成 25 年度における行政機関及び独立行政法人等 の個人情報保護法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 2014.

최대치를 기록했다.<sup>20)</sup> 그리고 정정청구건수는 행정기관이 21건, 독립행정법인이 14건으로 나타났고, 이용정지청구는 행정기관이 6건, 독립행정법인이 3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개인정보침해(유출, 멸실, 훼손) 사건 수는 행정기관이 761건, 독립행정법인 등에서는 1,635건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감소추세이며, 내용별로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오송부·오송신이 488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독립행정법인 등의 경우에는 분실 1,117(68.3 %)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총무성은 각 기관의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심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 감사실시율은 행정기관은 95.3%(41개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은 93.1%(190개 기관)였다. 그리고 동 지침에 다른 각 기관의 정보보호관리자의 수는 행정기관은 대상기관 대비 98.3% (26,129명), 독립행정법인 등은 대상기관 대비 83.7%(9,707명)을 기록해 독립행정법인 등의 정보보호관리자 비율이 행정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민간부문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일본의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가 관련한 사업분야에 대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sup>21)</sup>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는 사업분야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분야별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전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소관 부처의 심의를 거쳐 의료, 금융·신용, 정보통신 등을 비롯한 27개 분야에서 40개의 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22)</sup>

20) 이 중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는 전부공개 58,496(49.0%), 일부공개 57,062건(47.8%), 비공개결정 3,859건(3.2%)으로 나타났고,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한 공개청구 중에서 공개결정 7,496건(92.7%), 일부공개결정 461건(5.7 %), 비공개결정 126건(1.6%)으로 나타났다.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6년 1월부터 설치 및 운영되는 관계로 아직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종전 소관 부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표 3-3-2] 소관 부처별 지침현황

분야	소관부처	지침의 명칭	수립검토시기
의료	일반	후생노동성	의료·개호 관련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지침(국장 통지)
			2004. 12. 24. 2010. 9. 17. 최종 검토
			건강보험조합 등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지침(국장 통지)
			2004. 12. 27.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국장 통지)
	연구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민건강보험조합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지침(국장 통지)
			2005. 3. 31. 2013. 10. 10. 최종 검토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등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지침(국장 통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2005. 4. 1.
			2005. 9. 15.
	후생노동성	인간계놈 유전자분석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고시)	2004. 12. 28. 2014. 11. 25. 최종 검토
			2004. 12. 28. 2014. 11. 25. 최종 검토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2. 28. 2013. 4. 1. 최종검토
			2004. 12. 28. 2008. 7. 31. 최종 검토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고시)	2006. 7. 30. 2013. 10. 1. 최종검토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고시)	2004. 12. 28. 2008. 7. 31. 최종 검토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2. 28. 2013. 10. 1. 최종검토
금융· 신용	금융	금융청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2. 6. 2013. 3. 19. 최종 검토

22) 2014년 3월 31일 기준자료이고, 消費者廳, 平成25年度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施行状況の概要, 2014, 17-22頁, 그리고 <http://www.caa.go.jp/planning/kojin/gaidorainkentou.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 지침(고시)	2005. 1. 6.
	신용	경제산업성	경제산업분야 중 신용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2004. 12. 17. 2009. 10. 9. 최종 검토
정보통신	전기통신	총무성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8. 31. 2013. 9. 9. 최종 검토
	방송	총무성	방송수신자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8. 31. 2011. 6. 29. 최종 검토
	우편	총무성	우편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8. 3. 25. 2012. 10. 1. 최종 검토
	서신	총무성	서신서비스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8. 3. 25.
경제산업		경제산업성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하는 지침(고시)	2004. 10. 22. 2009. 10. 9. 최종 검토
			경제산업분야 중 개인유전정보를 이용한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고시)	2004. 12. 17.
			의료정보를 위탁관리하는 정보처리사업자의 안전 관리지침(고시)	2008. 7. 24. 2012. 10. 15. 최종 검토
고용관리	일반	후생노동성	고용관리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7. 1. 2012. 5. 14. 최종 검토
			고용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중 건강정보를 취급시 유의사항(국장 통지)	2004. 10. 29. 2012. 6. 11. 최종 검토
	선원	국토교통성	선원의 고용관리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9. 29. 2013. 3. 29. 최종 검토
경찰		국가공안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소관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10. 2. 5. 2012. 6. 18. 최종 검토

법무부	법무성	법무부 소관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0. 29. 2009. 9. 30. 최종 검토
		채권관리회수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2004. 12. 16. 2010. 3. 15. 최종 검토
외무부	외무성	외무성 소관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12. 4. 2.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소관 사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1. 25. 2010. 3. 19. 최종 검토
문부과학부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소관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12. 3. 29.
복지부	후생노동성	복지 분야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13. 3. 29.
직업 소개 등	일반	후생노동성  직업 소개 사업,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 모집위탁자, 근로자공급사업자 등 이 균등대우, 노동조건 등의 명시, 구 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직업소개사 업자의 책무, 모집 내용의 정확한 표 시 등에 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고시)	2004. 11. 4. 2012. 9. 10. 최종 검토
	선원	국토교통성  무료 선원 직업 소개 사업자, 선원모 집을 하는 자 및 무료 선원 노무 공급 사업자가 균등대우, 노동조건 등의 명 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모집 내용의 정확한 표시에 대해 적절히 대 처하기 위한 지침(고시)	2005. 2. 28. 2013. 12. 12. 최종 검토
노동자 파견	일반	후생노동성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 한 지침(고시)	2004. 11. 4. 2012. 8. 10. 최종 검토
	선원	국토교통성  선원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2005. 2. 28. 2013. 12. 12. 최종 검토
노동조합	후생노동성	노동조합이 마련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고시)	2005. 3. 25. 2012. 8. 23. 최종 검토

기업연금	후생노동성	기업연금 등에 관한 개인 보의 취급 (국장 통지)	2004. 10. 1.
농림수산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9. 7. 10.
국토교통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소관 사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4. 12. 2. 2012. 3. 30. 최종 검토
환경	환경성	환경성 소관 사업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9. 12. 10.
방위	방위성	방위성 관계 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고시)	2006. 5. 2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이유가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지침의 제정 및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하지만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만 형사상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지금까지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실태 등을 고려하면,<sup>24)</sup>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지침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종전 각 소관 부처 주무장관이 하고 있던 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단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될 수 있다.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고충처리, 대상 사업자의 적절한 정보

23)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의해 보고된 개인정보침해건수는 2005년에 1,556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893건, 그리고 2011년에는 420건, 2012년에는 319건, 2013년에는 366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消費者廳, 平成25年度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施行狀況の概要, 2014, 7頁).

24) 각 사업분야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된 건수는 2012년에는 8건, 2013년도의 경우 2건에 불과하다(消費者廳, 平成25年度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施行狀況の概要, 2014, 2頁).

취급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대상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제37조). 그리고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대상 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를 위해 이용 목적의 특정,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본인의 요구에 응하는 절차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2조 1항). 또한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공표한 지침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도, 권고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2항). 2014년 3월 기준으로 39개의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있고, 이들이 작성한 지침의 수는 42개이다.<sup>25)</sup> 마지막으로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처리한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4. 3. 1. 기준).

[표 3-3-3]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업무 현황

소관부처	고충처리	설명요구	자료요구	지도	권고	기타조치 <sup>26)</sup>
국가공안위원회	0	0	0	0	0	0
금융청	162	47	0	89	0	177
총무성	262	47	34	34	0	0
후생노동청	3	3	0	13	0	13
경제산업성	329	52	34	38	0	5
국토교통성	10	0	0	0	0	0
합계 (중복 견 제외)	505	108	34	104	0	190

## VI. 결 론

일본에서는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4법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1법으로 소위 '5법 체계'에 의해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민간부문에 관한 개

25) 消費者廳, 平成25年度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 施行狀況の概要, 2014, 24-27頁.

26)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위반에 따라 행한 지도와 권고 이외의 조치사항을 뜻함.

인정보보호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동법 제1장 내지 제3장)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적용되는 특이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별칙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즉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경우도 국가행정기간,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로 나누어 각각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종전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그리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 이후 2년이 지나야 모든 규정이 전면적용될 예정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직 정착단계에 있으므로<sup>27)</sup> 법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의 역사에 비하면 다소 늦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의 취급분야 내지 산업별로 그 특성을 고려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중점을 둔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즉, 중앙정부의 주무부처가 관련 사업분야별로 지침으로 만들고 인정개인정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수행해오던 개인정보보호의 관리 및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부주도의 통일적으로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수행은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보장과 자율성 존중, 산업별 개인정보 내지 정보보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 장관과 협력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 양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27) 개정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실제 감독권한의 행사는 2017년이 되어서야 가능하다.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각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민간부문에서 자율규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법이 개정 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민간의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종래 자율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2014.
- 김상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저널7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2, 32-39쪽.
- 김상찬·강재정,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책」 21권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97-126쪽.
- 백문흠/전혜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12.
- 전은정/김학범/염홍열, “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권 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90-105쪽.
- 한은영,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 및 평가”,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17호(통권608호), 정보통신방송정책연구원, 2015, 5-38쪽.
- 瓜生和久(内閣官房 情報通信技術總合關連制度 參事官),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及び行政手續について, SAS FORUM JAPAN 2015, 2015.
- 内閣官房 IT總合戰略室 (2015). 概要 (個人情報保護法改正部分), 2015. 4.
- 内閣官房 IT總合戰略室 パーソナルデータ關連制度担当室, 「個人情報の保護に

「個人情報を保護する法律及び行政手續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2015年4月.  
消費者廳, 平成25年度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状況の概要, 2014, 22頁.  
總務省, 平成25年度における行政機關及び獨立行政法人等の個人情報保護法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 2014.

[Abstract]

## A Study on Data Protection Laws in Japan

Kim, Bong-su

*Ph.D.,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ersonal data(or Privacy) protection laws and institutions of Japan was starting from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authorities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And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also started from the privacy legislation that holds the administr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over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established until it was not until 2003. Currently, Japan'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re equipped with five laws. 4 out of 5 law legislation is for the public sector, one law is for the private sector. Privacy laws that govern the private sector is one of the amendments made in 2014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amendment was passed by Congress in September 2015. The meanings of the personal data became more apparent according to the law, was obtained, the usefulness of personal data, the personal data is protected and reinforced,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of electricity can be achieved with privacy globalization. The Privacy Commissioner

has also been installed in January 2016 in accordance with the law. Privacy in the private sector until now had been the Minister of Industry management and supervision. However, the Privacy Commissioner is integrated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ing to privacy Starting with 2017.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unified personal information than previously achieved. In particular, integrated supervision through the Privacy Commissioner may be in a disadvantage to reflect the guarantee and respect for autonomy, characteristics of industry-specific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o the private sector. In response the Privacy Act is that it complements it by preparing the regulations, subject to the relevant minister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cy Commissioner i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ndependen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viscosity of the importance of voluntary regulation in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 Personal data in Japa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Japa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ivacy committee,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